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제정 2023. 9. 27 조례 제19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이천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
5.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이천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